

5. 住宅建設工事 監督業務等に 관한 規則廢止令

建設部令 第564號 1994. 9. 15

주택건설공사감독업무등에 관한규칙은 이
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주택건설촉진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1994. 1. 7. 법률 제4,723호, 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 1994. 8. 16 건설부령 제561호)하여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을 위한 공사감독자의 현장배치·공사감독자의 업무등 주택건설공사감독업무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보완·반영하였으므로 동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건설부 제공〉

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